

【 주간이슈 】

보험신탁을 통한 자산관리서비스 선진화

진 익 연구위원

□ 신탁을 활용하면 다양한 유형의 자산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고 재산권이 다양한 형태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, 신탁은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의 효과적 수단임.

- 자산관리서비스 목표는 고객이 직면하는 투자위험, 사망위험, 수명위험을 포괄적으로 관리하여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생성하는 것임.
- 투자위험은 은행상품이나 금융투자상품, 사망위험은 보험상품, 장수위험은 연금상품을 통해 관리될 수 있음.
- 따라서 은행상품, 금융투자상품, 보험상품, 연금상품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될 수 있을 때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의 실질적 제공도 가능함.

□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실질적 제공을 위해 보험상품의 결합이 필수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, 현재 보험회사의 신탁경영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바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요구됨.

- 신탁업법을 대체하는 자금법이 금융투자업을 중심으로 신탁업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, 신탁경영 보험회사의 역할이 제한될 수 있음.
- 신탁업무 범위, 수탁재산 종류, 수탁금전의 운용대상 등에 관한 자금법 규정들은 금융투자상품과 은행상품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음.

□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보험금 수취인을 수탁자로, 보험금을 목적물로 설정하는 ‘보험신탁’이 도입되면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다고 판단됨.

- 신탁재산 종류나 수탁금전의 운용대상에 보험상품도 포함되도록 보험업법에 보완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신탁업무 범위를 보다 확대할 것을 제안함.
- 해외의 경우, 신탁재산 종류나 수탁금전의 운용대상이 포괄적으로 허용되고 있음.

※ 본 내용은 보험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연구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.

1. 검토배경

- 경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음.
 -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는 고객이 기대할 수 있는 향후 소득흐름이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자산구성을 자문하고 관리해 주는 서비스임.
 - 고령화, 공적연금의 축소, 금융시장 변동성 심화 등으로 고객별 재무설계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.
 - 거의 모든 유형의 금융회사들이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표방하여 다양한 형태의 복합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음.
- 2009년 2월부터 자금법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) 시행되면 신탁업이 금융투자업으로 포괄됨에 따라 본연의 신탁 기능이 제한되고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의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.
 - 신탁은 고객이 원하는 투자목표와 위험목표에 따라 은행상품, 보험상품, 금융투자상품을 복합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만큼,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단임.
- 이에 본고에서는 자금법에서 규정된 신탁제도가 자산관리서비스와 관련하여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국내에서 실질적인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험신탁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함.

2. 자산관리서비스 관련 보험신탁 의의

<자산관리서비스 설계 시 고려되는 위험요인>

□ 고객의 생애는 재무적 측면에서 세 국면으로 구성됨.

- 첫 번째는 준비국면으로 이때 교육과 기능 습득을 통해 인적자산(소득생성능력)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향후 누릴 수 있는 소득수준도 결정됨.
- 두 번째는 축적국면으로 경제활동과 저축을 통해 재무적 자산이 축적되며, 인적자산이 재무적 자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무적 자산의 비중이 점점 증가함.
- 세 번째는 소진국면으로 재무적 자산으로부터 생성되는 소득을 기반으로 잔여 생애 동안의 소비가 충당되고 남은 부분은 후세에게 이전됨.

□ 자산관리서비스 목표는 축적국면과 소진국면에서 고객이 직면하는 투자위험, 사망위험, 수명위험을 포괄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생성하는 것임.

- 고객은 투자위험, 즉 투자성과가 좋지 않아 소진국면에서의 소득생성을 위해 요구되는 적정 수준의 재무적 자산이 축적되지 못할 가능성에 직면함.
- 고객은 사망위험(mortality risk), 즉 사망으로 인하여 고객이 보유한 인적자산이 소멸되고 가족을 위한 소득생성이 중단될 가능성에 직면함.
- 고객은 장수위험(longevity risk), 즉 고객이 사망하기 이전에 고객이 보유한 재무적 자산이 완전히 소진되어 소득생성이 중단될 가능성에 직면함.
- 자산관리서비스는 고객이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고객의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인 소득흐름이 생성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.

<보험상품, 연금상품의 결합 필요성>

□ 본연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험상품의 결합이 필수불가결함.

- 투자위험은 은행상품이나 금융투자상품, 사망위험은 보험상품, 장수위험은 연금상품을 통해 관리될 수 있음.
- 따라서 은행상품, 금융투자상품, 보험상품, 연금상품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될 수 있을 때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의 실질적 제공도 가능함.

- 예를 들어,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에서는 복수의 투자목표들(기본적인 생활수준의 보장, 평균적인 생활수준 유지, 생활수준의 개선)이 복합적으로 추구되는데, 기본적인 생활수준의 보장을 위해 보험상품이 필수적임.

<표 1> 자산관리서비스의 복합적 투자목표

재무목표	기본생활보장	평균생활유지	생활수준개선
위험-수익	무위험-원금보장	저위험-저수익	고위험-고수익
투자대상	보험 , 원금보장자산	시장포트폴리오	고수익자산
관리방식	위험전가	분산투자	위험추구
비교대상	물가상승률	시장수익률	절대수익률

<신탁의 유용성>

□ 신탁을 활용하면 다양한 유형의 자산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고 재산권이 다양한 형태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, 신탁은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의 효과적 수단임.

- 신탁제도에는 다양한 형태의 전환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바, 고객의 전 생애에 걸친 소득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 적합한 재산관리제도임.
- 예를 들어, 재산권자와 관련하여 ① 권리자속성의 전환, ② 권리자 수의 전환, 그리고 재산권에 있어서 ③ 재산권 향유의 시간적 전환과 ④ 재산권 성질과 상태의 전환이 가능함.
- (권리자속성 전환) 고객이 신탁재산의 권리자로서 갖는 재산관리력, 경제적 신용력, 자연인으로서의 성격 등을 전환시킬 수 있음.
- (권리자 수 전환) 재산권의 귀속주체가 복수이거나 법인격이 없는 단체일 경우 단일 조정자로서 기능하거나, 반대로 단일 권리자가 복수로 전환될 수 있음.
- (재산권 향유 시점 전환) 재산권자인 본인, 친척, 피용자의 장래생활에 대비하고자 할 경우, 재산권의 이익향유 시점이 미래로 연기될 수 있음.
- (재산권 성질 및 상태 전환) 기존 재산권의 성질과 형태가 다르게 전환되거나, 하나의 재산권에 소극재산이 결합되어 포괄재산으로 전환될 수 있음.

3. 신탁 관련 제도변화

<신탁업무 범위 확대>

□ 신탁의 유용성이 인식되면서 신탁업무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.

- 2004년 신탁업법 개정 시 단일계약으로 여러 재산을 함께 수탁할 수 있는 종합재산관리신탁이 허용되었으며(신탁업법 제10조 제2항), 동 조항은 자금법에 그대로 수용됨 (자금법 제103조 제2항).
- 현행 신탁업법에 따르면, 신탁회사는 신탁법과 기타 관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신탁의 인수 및 신탁재산의 관리·운용·처분에 관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(신탁업법 제9조).
- 현행 신탁업법에서는, 신탁회사가 신탁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데, 신탁업법(제13조)에 8가지 업무와 시행령(제10조의8)에 3가지 업무가 열거됨.
- 자금법에는 신탁업의 범위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바, 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신탁업무의 범위도 포괄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.
- 자금법에는 신탁업무와 관련하여 신탁의 영업(자금법 제6조 제7항),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(자금법 제244조~제248조)만이 언급됨.

<보험회사 신탁경영 허용>

□ 2003년 보험업법 전면 개정 시,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신탁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보험회사 경영업무에 신탁업이 추가됨.

- 원칙적으로 인가요건을 충족하면 신탁업을 수행할 수 있고 신탁업무만 영위하는 전업 신탁회사가 원칙이었으나, 사실상 신탁경영 은행이 신탁업을 주도해왔고 부동산신탁회사만이 실질적인 전업회사임.
- 보험회사는 신탁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경영할 수 있음 (보험업법 제11조, 동법 시행령 제16조).
- 경영업무에 대해서는 자산-부채, 수익-비용 등을 보험업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함 (보험업법 시행령 제17조).

- 2005년 신탁업법 개정 시, 신탁경영 금융회사에 대한 신탁업법 일부 조항의 적용이 배제(신탁업법 제29조의3)됨에 따라 보험회사 신탁업 경영이 실질적으로 허용됨.
 - 상호(제7조제1항), 임원자격(제8조의2), 고유자금운용의 제한(제15조) 및 내부통제기준(제24조의4)의 규정이 해당 조항임.
 - 신탁경영 금융회사(은행, 보험회사, 증권회사)는 특정금전신탁이나 재산신탁 업무를 영위하는 한편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.

<보험회사 신탁경영 현황>

- 그러나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경영허용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신탁경영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바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요구됨.
 - 2007년 하반기에 신탁경영 보험회사가 처음으로 출현하였으며, 2008년 현재 신탁경영 보험회사는 총 5개사임.
 -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생명보험(2007년 9월), 삼성생명보험(2007년 12월), 교보생명보험(2007년 9월), 대한생명보험(2008년 5월), 흥국생명보험(2008년 5월)의 신탁업 영위를 인가
 - 보험회사의 신탁경영 현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들 중 하나는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경쟁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신탁 서비스의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판단됨.

4. 문제점

- 신탁업법을 대체하는 자금법이 금융투자업을 중심으로 신탁업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, 신탁경영 보험회사의 역할이 제한될 수 있음.
 - 자금법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에 신탁업자를 규제하던 신탁업법은 폐지됨 (자금법 부칙 제2조).
 - 신탁업무 범위, 수탁재산 종류, 수탁금전의 운용대상 등에 관한 자금법 규정들은 금융투자상품과 은행상품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음.
 - 현 규정상으로는 보험상품을 활용한 신탁의 개발이 불가능하고 보험회사의 역할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.

<금융투자성에 따른 제한>

- 자금법에서 신탁업이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포함됨에 따라, 신탁경영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신탁의 범위가 제한됨.
 - 기본적인 생활수준의 보장이라는 재무목표를 위해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약정하는 신탁이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, 신탁경영 보험회사는 이러한 신탁에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음.
 - 그러나 자금법 규정에 따른 신탁업은 투자성(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의 위험) 부담을 전제로 하는 만큼, 신탁경영 보험회사도 투자성을 부담하지 않는 신탁은 취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.
- 신탁업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할 수 없음 (자금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).
 - 다만 연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할 수 있는데(자금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), 이는 신노후생활연금신탁, 연금신탁, 퇴직일시금신탁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을 하는 경우임(금융투자업규정 제4-82조 제1항).
 - 한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관리신탁은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 됨(자금법 제3조 제1항).

□ 또한 자금법 규정에서 투자신탁 수탁자의 지위를 투자신탁재산을 단순히 보관 및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만큼, 신탁경영 보험회사의 지위에 이에 따라 제한될 것으로 판단됨.

-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을 신탁 받는 경우, 그 신탁에 한하여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(자금법 제245조).

<신탁재산 열거에 따른 제한>

□ 자금법에서의 수탁 가능한 신탁재산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바, 신탁경영 보험회사의 경쟁력이 제한됨.

- 자금법(제103조)에는 기존 신탁업법(제10조)에서와 유사하게 수탁재산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는데, 이는 포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.
- 신탁업자는 금전, 증권, 금전채권, 동산, 부동산, 부동산 관련 권리(지상권, 전세권, 부동산임차권,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등), 무체재산권(지적재산권 포함)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음.
- 보험계약은 열거된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바, 신탁경영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수탁할 수 없다고 판단됨.

<수탁금전 운용대상 열거에 따른 제한>

□ 자금법에서 수탁금전의 운용대상을 열거하고 있는 바, 신탁경영 보험회사의 경쟁력이 제한됨.

- 자금법(제105조)에는 기존 신탁업법(제15조의2)에서와 유사하게 신탁재산 중 금전의 운용 대상이 열거되어 있는데, 이는 포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.
-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증권의 매수, 장내-장외파생상품의 매수, 금융기관에의 예치, 금전채권의 매수, 대출, 어음의 매수, 실물자산의 매수, 무체재산권의 매수, 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함.
- 보험계약은 열거된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바, 신탁경영 보험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됨.

5. 해외사례

<미국 사례>

- 미국의 법체계는 포괄주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는 관계로, 신탁재산 종류, 신탁금전의 운용대상 등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.
- 미국에서 신탁업무는 각 주가 제정한 규정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며, 최근 각 주의 신탁업무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이 추진됨.
- 2000년 Uniform Law Commissioners의 주도로 UTC(the Uniform Trust Code)가 제정되어 보급됨.
-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'보험신탁'이 자산관리서비스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.
- 미국 신탁회사들의 수익 중 상당부분이 '보험신탁'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

<일본 사례>

- 일본에서는 보험업법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신탁 업무를 허용함.
- '보험금신탁'을 보험업법(제99조)에서 규정하고 있음
- 생명보험회사는 고유업무(제97조) 및 부수업무(제98조) 이외에 고유업무의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탁업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신탁을 인수하는 업무 영위할 수 있음 (제99조 제3항)
- '보험금신탁'이 신탁업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

6. 개선방안

<기본방향>

- 자금법 상의 신탁업 범위를 벗어나는 신탁에 대해 보험업법에서 보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.
 -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의 실질적 제공을 위해 보험회사가 보유한 경쟁력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.
 -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는 스폰서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데, 보험회사와 고객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장기적 거래관계를 토대로 효과적인 신뢰구축이 가능함.
 - 보험회사는 장기적인 자산운용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, 고객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적 재무설계에 보다 적합함.
- 보험회사에게 투자성 없는 신탁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, 보험회사가 경쟁우위를 갖는 신탁서비스의 개발이 가능할 것임.
 -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에서 핵심 경쟁력은 고객의 요구에 맞춰 은행상품, 보험상품, 금융투자상품 등을 복합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능력임.
 - 그러나 자금법 규정에는 예금과 금융투자상품이 수탁금전의 운용대상으로 열거된 반면 보험상품은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, 이는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에서 보험상품이 갖는 중요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됨.
 -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, 신탁재산 종류나 수탁금전의 운용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.
 - 수탁금전의 운용을 은행상품과 금융투자상품에만 허용하는 것은 업권간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되는 바, 보험상품도 운용대상에 포함시켜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- 보험업법에서 신탁업무 범위, 신탁재산 종류, 수탁금전의 운용대상 등에 관한 보완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.
 - 자금법에서 관련 규정들을 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개정하는 방안도 가능하지

- 만, 자금법 상 신탁업은 투자성 부담이라는 원칙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됨.
- 신탁법에서는 수탁재산 종류나 수탁금전의 운용대상 등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음.

<보험신탁 도입>

- 신탁제도가 개선되어 국내에서도 ‘보험신탁’의 활용이 가능해지면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다고 판단됨.
- ‘보험신탁’은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보험금 수취인을 수탁자로, 보험금을 목적물로 설정하는 신탁임.
 - 보험료지급기금 자체를 신탁으로 하는 방법, 수탁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방법, 기존의 보험계약의 수취인의 권리를 수탁자에게 신탁 양도하는 방법 등 복수의 패턴을 상정할 수 있음.
 - 보험금을 신탁할 때 수탁자에게 보험금 분배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두면, 보험금 지급시점에 각 수취인의 자력 등에 따라 정확하고 확실한 보험금 분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.
- 국내에서 ‘보험신탁’이 가능해지려면 관련 규정의 정비가 요구됨.
 - 보험료지급기금 자체를 신탁으로 하는 것을 신탁재산 중 금전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.
 - 수탁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것이 신탁업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.
 - 기존의 생명보험계약의 수취인의 권리를 수탁자에게 신탁 양도하는 것이 수탁 가능 재산에 포함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KiRi.